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06634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호준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7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1.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09,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원고는 영상컴퓨터그래픽특수시청각효과영상컴퓨터애니메이션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2016. 1.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30. 퇴임하였다.
- 3)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D 주식회사(대표자 E)는 F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였다.
- 4) 주식회사 C와 F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G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주주 변동

- 1) G 유한회사는 2016. 1.경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의 지분 60%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2) 원고는 이후 유상증자를 하였고, I 유한회사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았다. 그 결과 I 유한회사는 2017. 6. 30.경 원고의 지분 39.29%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되었고, G 유한회사는 원고의 지분 32.04%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의 정관 및 주주총회

- 1)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원고의 2016. 3. 24.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2017. 3. 23.자 정기주주총회, 2018.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각 의사록에는 이사 보수 한도액에 관하여 해당 년도만 변경된 이외에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보수

1) 한편 피고는 2016. 1. 12.부터 2016. 8월분까지 기본급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보수를 받았다.

2) 피고는 2016. 9월분부터 2017. 10월분까지 수회에 걸쳐 기본급을 11,000,000원 내지 15,416,667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보수를 받았다.

3) 2016. 8월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 9월부터 2017. 10월분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중 인상된 금액은 23,215,917원이다(이하 '이 사건 보수인상액'이라 한다).

바. 피고의 주거지원

1) 한편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7. 4. 24. J 등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4000,000원(매월 15일 선불)로 정하여 임차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1.부터 2019. 2.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차임, 미납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합계 147,061,578원을 지출하고, 임대차 종료 이후 2019.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329,790원) 합계 100,329,790원을 반환받았다. 그 차액은 46,731,788원(= 147,061,578원 - 100,329,790원, 이하 '이 사건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또는 위법하게 보수를 인상하고 주거지원금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인상액, 이 사건 주거지원금 등 70,309,495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 2)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70,309,49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고의 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수인상액 및 주거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인상액 및 주거지원금 합계 상당의 부당이득금

69,979,705원(= 23,215,917원 + 46,731,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4.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70,309,495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장기수선충당금 329,7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수인상액 및 주거지원금과 관련하여 그 보수 내지 주거지원은 이사의 보수 내지 특별보수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가 적용된다.

②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그럼에도 피고는 당시 상법 제388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받지 않았다(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었고 보수인상 및 주거지원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2016. 3. 24.자, 2017. 3. 23.자, 2018. 3. 29.자 각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주주총회에서 피고와 같은 직접 개별 이사의 보수 액수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설령 I 내지 E가 원고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피고의 보수인상, 주거지원 상황을 잘 알고서도 수년에 걸쳐 피고의 인상된 보수 내지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가 2016. 1. 1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M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었고, M의 2015년 보수(기본급)는 월 5,533,333원 내지 6,783,333원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주거지원에 대한 무효행위의 추인) I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1대 주주로 되었다. 이후 I은

원고 회사에서 피고를 내쫓을 목적으로 E를 통하여 보수 인상 내지 주거지원을 문제삼았다. 이후 피고는 2017. 10. 27.자 통고서(갑 제6호증)를 받고 2017. 11. 7. 원고의 이사회를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 결재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피고의 보수가 월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갑 제11호증의 1).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거지원을 계속 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거지원을 추인한 것이다.

② (권리남용) 원고는 지난 3년 동안 피고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I, E 등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취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원에 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공성봉